

<별 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3조의2의 제목“(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신청방법)”을“(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신청방법 및 심사기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9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59조제3항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걸리는 기간
2. 영 제5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승인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제5-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3조의3(금리인하 요구 등) ①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각 호와 같다.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 대출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절차 및 기록의 보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으로 한다.

제7-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2명”을 각각 “3명”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9-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험회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험회사는 불공정한 손해사정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의 감액 사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허가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2.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3.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별표 3 가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

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라.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1) 이사회구성 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사회 구성방법에 부합할 것
-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3)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보험소비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 (4)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 (5)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6)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 (7)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별표 4 제1호가목(2) 중 “200%”를 “100%”로, 같은 목 (3) 중 “150%”를 “100%”로 하고, 제2호가목 중 “300%”를 “200%”로 한다.

별표 13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재조정된 대출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1)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가)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나) (가)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하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고정이하” 여신)

(가)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나)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

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
로 분류변경 가능

(다)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이
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
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
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하
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3) 보험권 자체 채무조정

(가) 자체 채무조정이란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로서, 등급
상향일 현재 채무불이행 등록정보가 없을 경우로 한함

(나) 채무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
우로서 1년간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다) 채무조정 개시 시점 “고정이하” 여신:

(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
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i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

의”로 분류변경 가능

(ii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가능

(4) 재연체 발생시 자산건전성 분류

(가) 채무조정후 성실상환 채권에 해당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 하였으나, 연체 등 자산건전성 등급 하향조정 사유 발생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여 자산건전성을 엄격히 분류

(나) 다만 “정상”으로 분류된 이후 총상환기간의 1/2 이상 변제계획

대로 정상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자

산건전성 분류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제7-4조제1항, 제9-16조 및 제9-2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승인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3조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승인·허가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위원회에 관한 특례) 이 규정 고시일 이전에 위촉된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7-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각 호와 같다.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 대출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절차 및 기록의 보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2인
2.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2인
3.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1인

4. ~ 6. (생략)

③ ~ ⑦ (생략)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 ⑤ (생략)

<신설>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 ~ ⑤ (생략)

<신설>

② -----

-----.

1. -----

----- 3인

2. -----
--- 3인

<삭제>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험회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험회사는 불공정한 손해사정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의 감액사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10-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행 력).

<신 설>

마련하고 이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10-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허가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2.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3.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